

식약청 벌꿀 규격, 수분 기준 강화

- 현행 21% 이하에서 20% 이하
- 전화당은 65% → 60%로 오히려 완화

식품의약품안전청(이하 식약청)의 벌꿀규격기준이 일부 변경됐다.

한국 양봉협회와 식약청, 소비자 단체는 벌꿀 자율도시제도 및 벌꿀 규격기준 조정 과정에서 수분과 전화당을 국제기준으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있다.

식약청은 지난 12월 9일 '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'를 통해 벌꿀 규격기준의 수분을 강화하고 전화당을 완화한다고 밝혔다.

식약청은 지난 6월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
이에 따라 Codex 등 국제 기준과 같이수분을 현행 21.0%이하에서 20.0%이하로, 전화당 기준

을 현행 65.0%이상에서 60.0%이상으로 개정했다.

특히 식약청은 이번 벌꿀 규격 개정으로 양봉업자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되고,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편 한국양봉협회는 고시된 규정에 따라 협회에서 실시하는 벌꿀 검사규격기준을 식약청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회원 및 관련업계에 홍보할 방침이다.

이번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. **양봉**

식품공전 벌꿀 규격기준

구 분	식품공전 규격기준	개 정
성 상	고유의 색체와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하며 밀원에 따라 결정이 생성될 수 있다.	
수 분 (%)	21.0 이하	20.0 이하
물불용물 (%)	0.5 이하	
산 도 (meq/kg)	40.0 이하	
전화당 (%)	65.0 이상	60.0 이상
자 당 (%)	7.0 이하	
H.M.F(mg/kg)	80.0 이하	
타 알 색 소	불검출	
인공감미료	불검출	
이 성 화 당	음 성	